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본인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거래조건)

- · 대출기간: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
- · 이자미납시 처리기준: 이자미납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시점에 미납이자를 가산하고, 그 이후 이자는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부과함
- ※ 즉시변제 및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2조부터 제9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번호	상품명	금리구분	산정기준	기준금리 (A)	가산금리 (B)	적용금리 (A+B)
대출한도율			대출금액		이자납입일	

제 2조 (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 3조 (대출기간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

- (1)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내로 하되, 본인은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상환일 현재 유지 중이거나, 효력상실 중인 계약으로 그 보험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2005.4.1 이후 체결된 계약은 유지 중인 계약의 경우에만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가능함)

제 4조 (대출이자납입 등)

-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2)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일(이하 "이자납입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며, 이자납부일까지 이 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미납이자가 가산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단, 실제 보험계약대출 원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 (3) 이자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 (4) 이자납입은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사이버창구, 신한 SOL라이프 앱을 이용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입할 수 있다.
- (5) 은행자동이체로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동이체 청구일 중 본인이 선택한 이체일을 이자납입일로 하며, 회사는 다음이체일에 재청구한다.
- (6) 추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대출금액을 지급할 때 기존 대출의 직전 이자 납입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고객보관용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제 5조 (즉시변제)

- (1)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①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끝남)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8.1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8.1 부터 2005.3.31 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당 계약이 해지 (효력상실) 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4.1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당 계약이 해지되는 때
- (2) 제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총 지급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해당 계약을 소멸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 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6조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및 자료제출)

- (1) 본인은 본 약정에 의한 외화대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①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 ②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 (2) 본인은 회사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이를 제출한다.

제 7조 (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등에게 지급한다.

제 8조 (주소변경통지의무)

-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등 기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9조 (부대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 및 부대비용은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균등 부담한다.

